

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
삼성KODEX증권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

증권[주식형] 집합투자기구

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2.05.28 - 2012.12.31

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종개업자: 교보증권,
 신한금융투자, 대신증권, 대우증권,
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현대증권,
 에이치엠씨투자증권, 동양증권, SK증권,
 케이비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, KTB투자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.06.29	제12조 (투자신탁회계기간) 다만, 신탁 계약 해지 시에는 투 자신탁회계 기간 초일 부터 신탁 계약의 해 지일까지로 한다. 1. 2012년 5월 27일 경과후의 최초회계기 간 : 2012년 5 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. 제1호의 회 계기간 경과후 의 회계기간 : 2013년 1월 1 일 부터 매1년 간	다만, 2012년 5월 27일 경과 후에 도래하는 자신탁회계 기간은 다 기간 초일 음의 각호에 부터 신탁 기간으로 하 며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 자신탁회계기 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 지일까지로 한 다. 1. 2012년 5월 27일 경과후의 최초회계기 간 : 2012년 5 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. 제1호의 회 계기간 경과후 의 회계기간 : 2013년 1월 1 일 부터 매1년 간	

2012.06.29	제38조 (투자신탁보 수의 계 산기간(이 하 “보수 계산기간” 이 라 한다)은 제 41조의 투자신 탁분배금 지급 기준일(단, 회 계기간 종료일 을 제외하며, 이하 “분배금 지급기준일” 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산출 하며, 이하 “분배금 지급기준 일”이라 한다)을 기 준으로 산 출하되, 구 체적인 보 수계산기간 은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 출은 투자 신탁분배금 지급일로 한다. 1. 생 략 2. 제1호의 보 수계산기간 이 후 도래하는 보수계산기간: 직전의 보수계 산기간 종료일 의일부터도래 하는 매분배금 지급기준일까 지 3. 생 략 4. 제 1 호의 보수계산기 간 이후 도 래하는 보 수계산기 간: 제 1 호 의 보수계 산기간 종 료일 익일 부터 최초 로 도래하 는 분배금 지급기준일 까지 5. 수익자 총회 관련 비용	① 생 략 ②투자신탁보 수의 계산기간 (이하 “보수 계산기간” 이 라 한다)은 제 41조의 투자신 탁분배금 지급 기준일(단, 회 계기간 종료일 을 제외하며, 이하 “분배금 지급기준일” 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산출 하며, 이하 “분배금 지급기준 일”이라 한다)을 기 준으로 산 출하되, 구 체적인 보 수계산기간 은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 출은 투자 신탁분배금 지급일로 한다. 1. 생 략 2. 제1호의 보 수계산기간 이 후 도래하는 보수계산기간: 직전의 보수계 산기간 종료일 의일부터도래 하는 매분배금 지급기준일까 지 3. 생 략 4. 제 1 호의 보수계산기 간 이후 도 래하는 보 수계산기 간: 제 1 호 의 보수계 산기간 종 료일 익일 부터 최초 로 도래하 는 분배금 지급기준일 까지 5. 수익자 총회 관련 비용
2012.06.29	제39조 (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비용 등)	②-1. ~ 4. 생 략 5. 수익자 총회 관련 비용

		6. ~ 11. 생 략 추 가	6. ~ 11. 생 략 12. 추정 NAV 산출 등 한국 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산출 비용
2012.06.29	제41조 (투자신 탁분배금 의 지급) 2012.06.29	①-1. 지급기 준일: 1월, 4 월, 7월, 10월 월, 10월 마지막 일 및 회계기 간 말일의 의 영업일	①-1. 지급기 준일: 1월, 4 월, 7월,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 간 말일의 회계기간 종료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

안진회계 법인	1 년	55 만 원	서면 계약	-	-	-	-	-
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	---	---	---	---	---

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 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 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 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 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 - 해당사항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변경일 자	변경사 유	성명	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	협회등록번 호
2012.0 6. 29	말소	김남 기	-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성자산운 용 신탁회계팀 - 채권 2 팀 - 채권 1 팀 - ETF 운용팀	2109001159
2012.0 6. 29	신규	김남 의	- 한국과학기 술원 산업공학학 사 - 삼성자산운 용 ETF 운용 1 팀	2110000109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 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인명	계 약 기 간	감 사 보 수	계 약 방 법		회계 감 사 인 명	계 약 기 간	감 사 보 수	계 약 방 법